해외 금융자산 보고

주최: 한인사회 연구원
후원: 시카고 총영사관
(2014년 6월 21일)

발표자: 손헌수 변호사/공인회계사

WHO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세법상 거주자

WHAT

- Global Income: 전세계 모든 곳의 모든 수입(1861)

-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970년도부터 시행된 제도. $10,000 이상 해외금융계좌 보고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 납세 준수법

  2010년부터 시행,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소득세 보고시 추가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WHY

-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수집
- 미 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해외 자금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세원 확보
- 증여, 상속 등 기타 세금에 장기 적용하기 위함
- 테러등 불법자금 유입 경로 확인

FBAR – FINCEN 114

BSA E-Filing System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BSA Home
Using BSA E-Filing
Take a Tour
File an Individual FBAR
Become a BSA E-Filer
Frequently Asked Questions
Help
Site Map

E-Filing System Login

Welcome to the BSA E-Filing System

The BSA E-Filing System supports electronic filing of Bank Secrecy Act (BSA) forms (either individually or in batches) through a FinCEN secure network. BSA E-Filing provides a faster, more convenient, more secure, and more cost-effective method for submitting BSA forms. Additional benefits are listed under Using BSA E-Filing.

How does BSA E-Filing work?

The BSA E-Filing System is hosted on a secure website accessible on the Internet. Organizations that file BSA forms with FinCEN can securely access the system after they apply for and receive a user ID and password from FinCEN.

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Become a BSA E-Filer

Hot Topics

- BSA E-Filing System Updates
- FBAR Electronic Filing Technical Overview
- Informational Webinar: FBAR Electronic Filing Technical Overview

User Quick Links

- RMSB Website

FBAR Filers

- File an Individual FBAR
- Line Item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FBAR
- FinCEN Form 114(a)

Supervisory Users

- Getting Started with BSA E-Filing
- Submitting the Supervisory User Application Form
- Obtaining Authorization as Supervisory User

General Users

- Downloading the Adobe Reader

Taxon

FBAR

- 한해중에 해외계좌에 $10,000 이상 보유자
-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보고(연장불가)
- 보유한 전 계좌를 합산하여 $10,000 이상 되는경우
- 계좌가 해당연도에 폐쇄 되었어도 보고
- 일년중 단 하루라도 $10,000 이상이 되면 보고
- 타인과 공동 소유 계좌가 $10,000 이상인 자
- 돌려줘야 할 전세자금이나 잠시 빌린 돈도 해당됨.

FBAR-해외자진 신고프로그램(OVDP)
(Off 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2012.1.9 IRS발표)

지난 8년간의 세무신고서 원본 및 수정세무신고서 제출
미신고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이자납부

자진신고 이전의 8년 과세기간중 가장 높은 해외은행 계좌 누계잔액 또는
해외자산 누계액의 27.5%를 penalty 로 지불해야함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음

특별한 경우 5 %, 12.5% 페널티율이 제한적으로 적용될수 있음

FBAR -Penalty

- 고의가 아닌 경우: 한건당 $10,000
- 고의에 의한 경우: $100,000 또는 잔고의 50% 중 큰 금액, 형사처벌도 가능함.

FATCA-2010년 3월 입법

- 미국의 개인: Form 8938
  $50,000/$75,000 또는 $100,000/$150,000
- 해외 금융기관:FFI
  FFI는 IRS에 등록하여 정보 제공
- 외국정부:IGA
  IRS와 정보 교환

FATCA-개인 FORM 8938

Form **8938** (December 2013)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 Information about Form 8938 and its separate instructions is at *www.irs.gov/form8938.*
▶ Attach to your tax return.

OMB No. 1545-2195
Attachment Sequence No. **175**

If you have attached continuation statements, check here ☐ Number of continuation statements _____

Name(s) shown on return	Identifying number

Part I Foreign Deposit and Custodial Accounts Summary

1	Number of Deposit Accounts (reported on Form 8938) ▶	
2	Maximum Value of All Deposit Accounts	$
3	Number of Custodial Accounts (reported on Form 8938) ▶	
4	Maximum Value of All Custodial Accounts	$
5	Were any foreign deposit or custodial accounts closed during the tax year?	☐ Yes ☐ No

Part II Other Foreign Assets Summary

1	Number of Foreign Assets (reported on Form 8938) ▶	
2	Maximum Value of All Assets	$
3	Were any foreign assets acquired or sold during the tax year?	☐ Yes ☐ No

Part III Summary of Tax Items Attributable to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see instructions)

(a) Asset Category	(b) Tax Item	(c) Amount reported on form or schedule	Where reported (d) Form and line	(e) Schedule and line
1 Foreign Deposit and Custodial Accounts	1a Interest	$		
	1b Dividends	$		
	1c Royalties	$		
	1d Other income	$		
	1e Gains (losses)	$		

아파트 등의 부동산은 보고대상에서 제외, 임대수익은 소득세 보고시 포함

Taxon

FATCA -Penalty

- 고의가 아닌 경우: 한건당 $10,000, IRS 경고를 받은 날로 부터 매 30일 경과시마다 $10,000추가 UP TO $60,000 + 세금의 40% Penalty
- 고의에 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함.

FATCA: FFI(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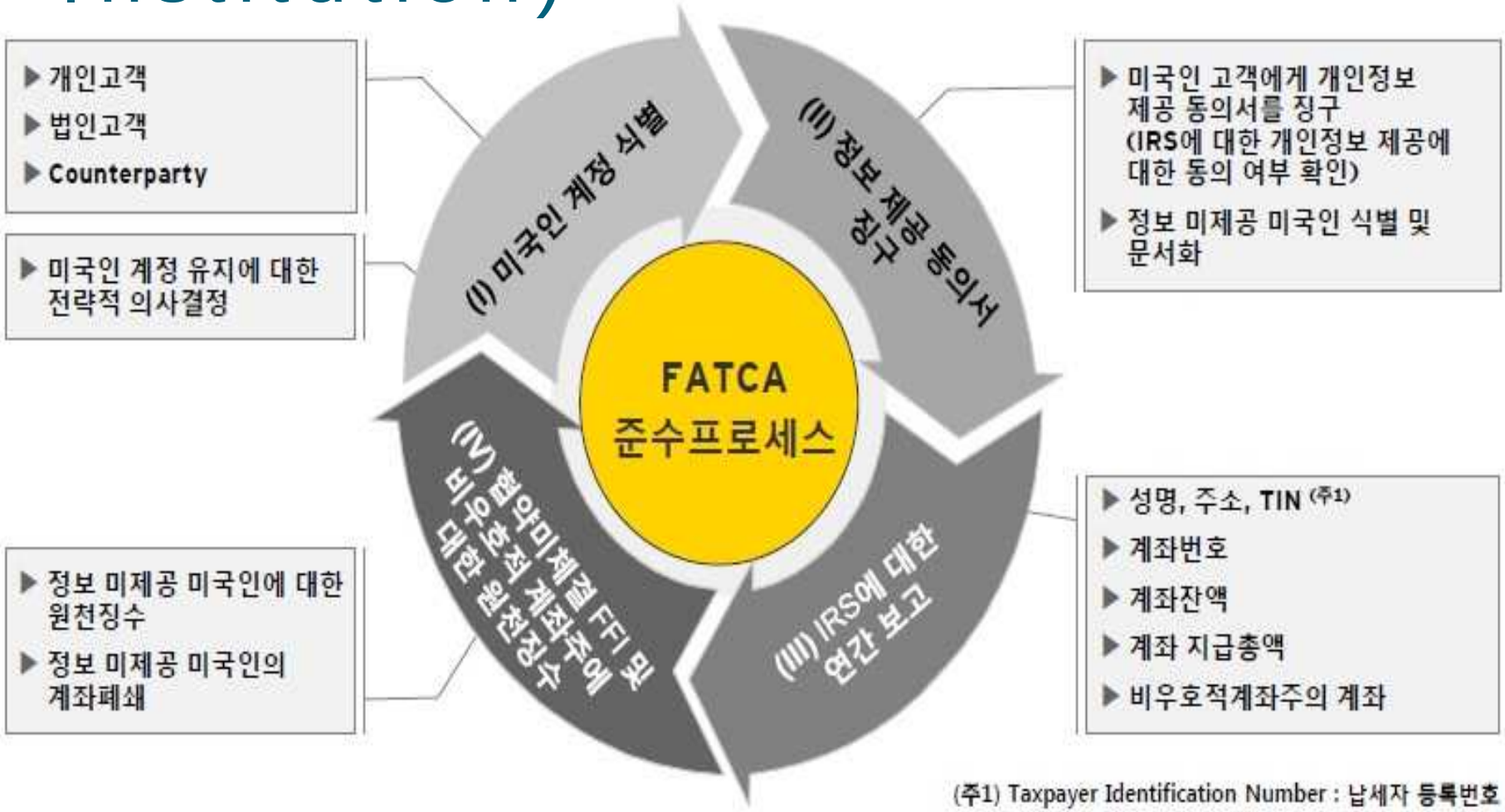

(주1)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납세자 등록번호

FATCA: FFI

조사 및 보고의 주체: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한 정보 파악

- 1. 거소증, 외국인등록증으로 만든 계좌
- 2. 출생지, 거주주소, 통신 주소, 전화번호
- 3. 보호관리주소, 우편물 보관주소
- 4. 미국인에게 위임권 또는 서명권 부여
- 5. 미국으로 계좌 이체 사실

이러한 정보에 해당될 시 W-9 및 정보제공동의서, 추가관련증빙 (한국국적여부)를 확인하여 미국인, 비미국인 계좌로 분리.

계좌금액에 따라 다시 강화된 검토과정을 거치게됨

Taxon

FATCA: FFI(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 외국금융기관들(FFI)은 FATCA 규정에 따라 IRS와 FFI협약을 체결하고 이에따른 의무를 이행 하여야함 미이행 금융회사는 미국내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30%를 원천징수 당하는 불이익 발생.

- FFIs located in a Model 1 IGA jurisdiction (Reporting Model 1 FFIs) should register to obtain a GIIN, but they do not need to provide a GIIN to withholding agents until January 1, 2015, so they have additional time to register.

- Model 1에 참여하는 FFI들은 2013년도분 미국인 계좌정보를 보고할 필요X
- 2014년도말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2015년 9월 30일까지** IRS에 보고

FATCA-FFI(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 참여 FFI로서 각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특정미국인**소유의 금융계좌, 상당한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소유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할 의무.

- 특정미국인:

  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국내파트너쉽, 국내법인, 국내상속재단, 국내신탁)에서 상장법인 및 그 계열사, 외국정부가 100%소유한 국내법인등을 제외한것

- 정보:

  고객이름, 납세자번호(TIN), 계좌번호, 계좌잔고, 금전가치, 계좌소득, 이체금액 등

FATCA-FFI List

- CITI BANK
- KOREA EXCHAGE BANK
- KOOKMIN BANK
- HANA BANK
- SHINHAN BANK
- WOORI BANK
- NH BANK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KTB Asset Management
- 대우증권
- SK증권
- 삼성증권

FATCA-외국 정부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2014년 3월 17일)

한국
금융기관
(FFI)

잔액5만달러이상
계좌정보

NTS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정보
교환

IRS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금융기관

연간 $10달러이상
금융소득발생

법인: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Taxon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2164호, 2014. 1. 1. 공포・시행)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3항:**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14.1.1>*

- **상기 제 31조 3항에 보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간 협정(IGA)
(Intergovernmental Agreement)

부칙I

FATCA 보고대상 계좌를 확인하고 보고해야하는 due diligence(실사)의무

부칙 II

FATCA보고의무 면제대상 금융기관의 요건규정

소재국외에 사업장이 없고 소재국 외에서 계좌소유주 모집활동X,
소재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가 전체계좌의 98%이상 차지하는 지방은행

FATCA - 종류별 확인 및 보고기한

		실소유주 미국인 확인기한	미국인 확인시 보고대상 잔액	국세청 보고기간
신규계좌	2014년 7월1일 이후 개설계좌	계좌 개설 시 확인	2014년말 잔액 (이후 매년 말)	2015년 7월말까지 (이후 매년말)
기존계좌	**100만 달러 초과 "개인고객계좌"**	2015년 6월 30일 확인완료 해야함		
	5만~100만 달러 개인소액계좌	2016년 6월 30일까지 확인완료 해야함	2015년말 잔액 (이후 매년 말)	2016년 7월말까지 (이후 매년말)
	25만 달러초과~100만달러 "보험, 연금계약"			
	$25만달러 초과 "법인계좌"	해외금융기관보유계좌: 2015년 6월30일까지 그외의 법인계좌: 2016년 6월30일까지		

FBAR vs. FATCA

FBAR vs. FATCA

	FBAR	FATCA
보고대상	금융계좌	금융자산 (은행, 증권,보험,채권,합자회사에 관한 권리, 신탁, 파생상품 등)
기준금액	연중 1만 달러 이상	(연말금액/연중최고액) **미국내 거주시>** 싱글:$50,000/$75,000 부부합산:$100,000/$150,000 **해외 거주시>** 싱글: $200,000/$300,000 부부합산:$400,000/$600,000
보고시기	매년 6월 30일까지(연장 불가)	매년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 까지 (IRS)세금신고와 동일

	FBAR	FATCA(납세자 경우)
양식/신고처	FinCEN Form114 /연방재무부	FORM 8938/ IRS 에 신고
벌금	미신고 건당 1만달러 고의적인 경우 미신고금액의 50% 또는 $100,000중에 큰 금액	**개인:** 미신고 건당 1만달러 고의성 확인시, MAX(계좌잔액 50%) 또는 5년이하 징역도 가능 **금융기관:**미국원천소득의 30%
해외부동산, 보석, 외국지폐,골동품, 연금	신고의무 없음(X)	(X)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에 있는 자산(Citi Bank강남)	신고해야함 (O)	(X)
금융기관에 예치되지 않은 해외주식	(X)	(O)

ISSUE

- 소득이 낮아 세금 보고할 필요없는 사람

FBAR: O

FATCA: X

- 시민권자/영주권자로서 한국 거주자

FBAR: O

FATCA: O($400,000/$600,000)

- 부동산 소유자

FBAR: X

FATCA: X

INCOME TAX:O

ISSUE

- 신한은행 강남지점

FBAR: O
FATCA: O

- CITI BANK 뉴욕지점

FBAR: X
FATCA: X

- 신한은행 뉴욕지점

FBAR: X
FATCA: X

- CITI BANK 강남지점

FBAR: O
FATCA: X

The End

감사합니다.

Taxon